

● 제299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 3. 2.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김경영 의원 대표 발의 】

의안번호 2208

I.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가. 제안자 : 김경영 의원외 9명

나. 제안일 : 2021. 2. 5.

다. 회부일 : 2021. 2. 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평등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위원회 성별구성기준 미준수 사유를 심의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집합 회의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성평등위원회,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하여 비대면 회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또한 위원회 위원으로 서울시의회 여성정책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성평등위원회 기능에 자치구 각 위원회의 성별구성기준(특정 성별 60%이하) 미준수사유를 심의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8호).
- 성평등위원회와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서울시의회 여성정책관련 상임위원회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제3항, 안 제50조제3항).
-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의 경우, 위원회 회의를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8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규정에 상위법 반영 및 서울시의원 위촉 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나 천재지변 시에도 원격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 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구성·운영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임.

2 주요사항 검토

□ 성평등위원회 심의·조정사항 추가 (안 제6조제2항제8호 신설)

- 개정안은 지난 2020년 5월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치구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성별 구성 기준인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서울시의 성평등위원회 의결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 이는 성평등 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위촉직 위원의 구성 시에도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바탕으로 성평등을 실현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 7. (생략) <u><신설></u> 8. (생략)	제6조(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7. (현행과 같음) 8. <u>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u> 9. (현행 제8호와 같음)

□ 위원회 위원으로 서울시의원 위촉 근거 명시 (안 제7조제3항)

- 조례안은 성평등위원회와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에 서울시의원의 위원 위촉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를 근거로 구성된 3개의 위원회에 위원 위촉 근거를 통일하여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 서울시 성평등 정책 등 의 결정과정에 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참여를 높여 공급자 위주 의 전문가 중심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인정된다 할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구성) ① · ② (생 략)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 · 경제 · 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 장급 이상 공무원 중 시장이 지 명한 사람 10명 이내로 하고, 위 촉직 위원은 <u>성평등정책에 관한</u> <u>식견과 경험이 풍부한</u> 사람 중 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u><신 설></u>	제7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1. <u>서울특별시의회 여성정책관</u> <u>련 상임위원회 위원</u> 2. <u>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u> <u>경험이 풍부한 사람</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0조(격차개선위원회 구성) ① • ② (생 략)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노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u>성평등노동정책</u> 에 관한 <u>식견과 경험</u> 이 풍부한 <u>자</u>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u><신 설></u>	제50조(격차개선위원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u><신 설></u>	1. 서울특별시의회 여성정책관 련 상임위원회 위원 2. 성평등노동정책에 관한 식견 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원격회의 진행 규정 (안 제58조의2)

-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집합회의가 어려울 경우, 원격으로 현행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성평등위원회와 성평등기금운영심의위원회,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시의 성평등 정책 등 의 차질 없는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3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 등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할 것임.
 - 다만 시민의 대표로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견제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시각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음.

문의처

이정화 입법조사관 (02-2180-8146)